

졸업유예운영규정

제정 2009. 3.
 개정 2013. 2.
 개정 2014. 6.
 개정 2014. 8.
 개정 2015.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의2에 따라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유예”라 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졸업유예”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삭제(2014.8.25)

제4조 (유예기간) 졸업유예는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1학기과 여름학기 또는 2학기과 겨울학기) 이내로 하며, 유예신청은 총 2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4.8.25)

제5조 (유예절차) 졸업유예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제6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① 삭제(2012.9.7)

② 학칙 제9조 및 제4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을 인정받은 자(개정 2015.02.23.)

제7조 (신청시기) ① 최초 신청은 1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성적이 확정된 시기에 한다.

② 삭제(2012.9.7)

제8조 (유예조건) ①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② 졸업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졸업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졸업유예자가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한다.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졸업유예자는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 제20항에서 정한 학점포기는 할 수 없다(개정 2014.06.24)

제9조의2(졸업유예자의 졸업처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졸업유예를 한 경우 다음학기 졸업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 사정하지 않으며, 졸업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졸업처리 한다.

(신설 2014.06.24)

- 제10조 (기타사항)** ①졸업유예자 중 본 규정 제8조의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 ②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 ③제2항에서 정한 졸업유예 취소 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본 대학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④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한다.(개정 2014.06.24)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0학년도 현재 3학년 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4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제3조제2항, 제4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